■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[별지 제10호서식]

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(제46조제2항 관련)

보조사업 개요	
보조사업명	
보조사업자	기관명/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

부기등기(附記登記) 대상 부동산		
주 소		
물 건[1]	명칭	면적(㎡)
사후관리 기간	당초 : 년 월 일 ~ 년 월 일	변경 : 년 월 일 ~ 년 월 일

이 부동산은 「보조금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(附記登記) 대상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보훈부장관 직인

유의사항

1. 물건의 명칭은 토지(부지명), 건물(건물명)을 기재 / (예) 토지(○○리 마을회관부지), 건물(○○리 마을회관)
2.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“이 부동산(건물, 토지)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,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.“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